

2024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2024. 11.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목 차

I. 인권경영 개요	1
<input type="checkbox"/> 추진 배경	1
<input type="checkbox"/> 인권 영향평가 의의	1
<input type="checkbox"/> 추진 절차	2
<input type="checkbox"/> 인권경영 체계 구축 추진 단계별 주요 활동	3
<input type="checkbox"/> 중대성 평가	7
II. 2024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8
<input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 개요	8
<input type="checkbox"/> 20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11
<input type="checkbox"/> 2024년 인권영향평가 분석 의견	16
III. 2024년도 인권경영 운영 실적	18

[붙임] 2024년도 인권영향평가(기관운영/ 주요사업) 세부 결과

I 인권경영 개요

□ 추진 배경

-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인권경영 이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에 대한 요구 증가
- UN 『기업과 인권이행 지침(UNGP)』 및 경제협력기구(C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정, 각 국가의 『기업과 인권 NAP』 수립을 통해 인권경영 구체화
-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및 인권경영 실천 선도 역할 요구 (국가인권위원회, '18.8.)
 - 정부의 '18.8.7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2018~2022)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 권고('14.9)
 -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개선 권고('16.2), 기업과 인권 NAP 수립 권고('16.7)
- 공공기관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해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 요구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운영과 평가에 “인권경영 표준 매뉴얼” 활용 권고 ('18.8)
- 인권경영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제출('18.11.)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경영 이행계획 제출

□ 인권영향평가 의의

- 인권영향평가는 기관이 사업 수행의 결과 또는 그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함
- 인권영향평가는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서 제시하는 인권 실천·점검의무의 핵심 도구로, 평가 과정을 통해 기관 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관 활동이 인권 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
- 인권영향평가는 다른 기관과 비교하거나 대외적으로 과시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관 자체의 인권경영 취약지점을 발견하고,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함

□ 추진 절차

추진 건명	추진 내용	비고
1. 인권경영 운영 계획 수립	- 기관평가 등 의견을 반영한 연간 추진 계획 수립	1분기
2. 인권경영 위원회 개최		
3. 중대성 평가	- 인권영향평가 항목의 위험도(발생가능성, 영향심각성)를 평가 ※ 주요사업 부문 선정 등을 위하여 인사팀 등 관계 부서를 통하여 평가 실시	1-2분기
3-1. 주요 사업 선정을 위한 전직원 의견 조사	- 중대성 평가결과와 유관기관 체크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전직원 의견 조사	2-3분기
4. '주요사업 부문' 대상 사업 선정	- 관계부서 중대성 평가결과와 전직원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사업 부문' 사업 선정	3분기
5.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부문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	-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주요사업 부문 항목(체크리스트) 확정	3분기
6. 인권영향평가 자료 수합	- 체크리스트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를 관계 부서에서 수합	3-4분기
7.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경영위원회에서 체크리스트와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실시 ※ 기관운영부분 은 국가인권위원회 제시된 기준에 따라 기관 설정에 따라 선정하여 평가 실시 ※ 주요사업 부분 은 기관장 결정(주제 기준) 및 해당부서와 협의 후 체크리스트 작성 및 평가실시	3-4분기
8.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	평가결과 보고 및 자료의 홈페이지 탑재	4분기

□ 인권경영 체계 구축 추진 단계별 주요 활동

<참고> '인권경영' 단계별 목표 및 주요활동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 표	인권경영체계 구축 (기관 인권 경영 비 전과 의지 대내외 공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이행)	인권경영 실행-공개 (인권침해방지 및 완 화 조치)	인권 피해자 구제 절차 제공 (구제절차 마련)
주 요 활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시스템 구축 • 인권경영 선언 확산 • 인권경영지침 제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실시계획 수립 • 체크리스트 교육 • 평가 실시 • 결과 보고,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실행 • 인권경영과정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절차 준비 • 구제절차 수립 • 구제절차 시행 • 평가와 개선

○ 1-1단계 : 체계 탐색 단계

- 인권경영 이행계획 수립
- 인권경영 체계구축 TFT 구성
 - TFT 운영기간 : 2018. 11. 14. ~ 2019. 7. 31.
 - 1차 회의 개최일자 및 장소 : 2019. 1. 31. (목),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124호 회의실
 - 인권경영지침, 인권경영선언문, 인권경영평가에 대한 논의 진행
 - 인권경영에 대한 원내 공감대 확산 및 의견수렴 등
- 인권관련 규정 및 선언문 초안에 대한 자문시행

○ 1-2단계 : 체계 구축 단계

- 인권경영규칙 제정
 - 인권경영체계구축 TFT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추가반영하여 인권경영규칙 제정
 - 제정일 : 2019. 5. 1.
- 인권경영위원회 발족 및 인권침해상담원 구성
 - 제정 완료된 인권경영규칙을 근거로 인권경영위원회 발족 및 인권침해상담원 구성
 - 제정근거 : 인권경영규칙 제16조, 제17조, 제12조 3항
 - 목 적 : 인권경영과 관련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각종 정책의 심의 및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인권경영선언문 초안 의견 수렴

○ 1-3단계 : 활성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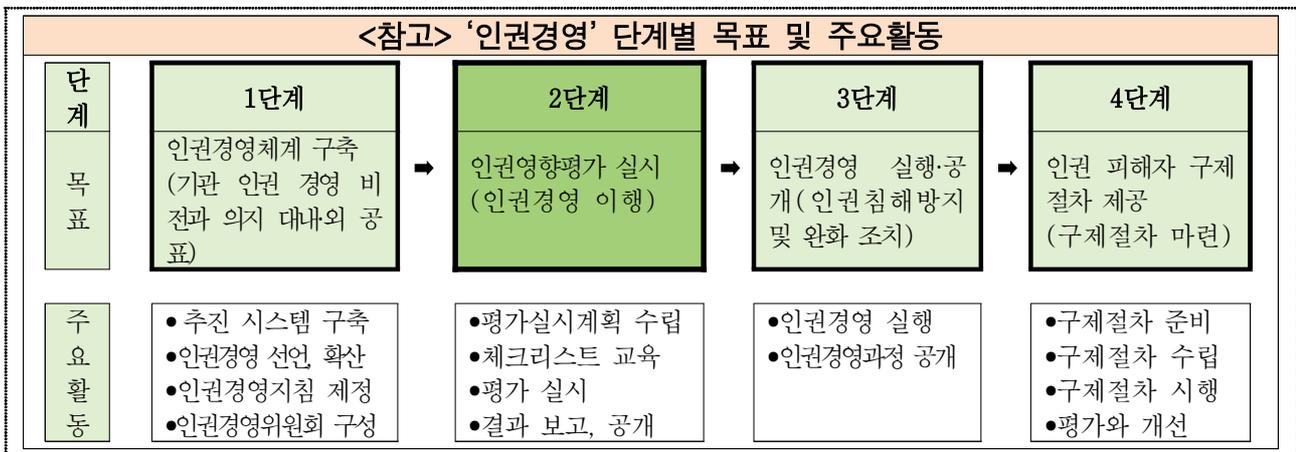
◦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 선포식 일자 및 장소 : 2019. 7. 15.,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212호 대회의실
- 전 임직원이 인권경영에 대해 인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 인권 존중에 대한 각종 국내외 규범의 존중과 준수,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성별·연령·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9대 원칙을 통해 인권경영의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선포

◦ 전직원 인권교육 실시

- 교육 시기 : 매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1회 이상 교육 실시
- 교육 방법 : 온라인 교육, 보직자 대면 교육, 인권침해 상담원 교육 등

○ 인권경영 체계구축 2단계 : 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영향평가 실시(인권경영 이행)

- 인권경영 체제를 구성하는 강제 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환경권, 인권 등의 요소를 종합한 종합 체크리스트 마련

◦ 인권영향평가(2단계) 실시 목적

- 기관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여 기관의 지속가능 발전 도모

◦ 평가 원칙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에 근거하여,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정보접근성 등 평가의 기본 원칙 수립 및 준수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지표'를 기반으로 기관 실정에 맞는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확정 후 평가 실시

○ 인권경영 체계구축 3단계 : 인권경영 실행·공개(인권침해방지 및 완화)

〈참고〉 '인권경영' 단계별 목표 및 주요활동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	인권경영체계 구축 (기관 인권 경영 비 전 과 의지 대내외 공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이행)	인권경영 실행·공개 (인권침해방지 및 완화 조치)	인권 피해자 구제 절차 제공 (구제절차 마련)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확산 인권경영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실시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교육 평가 실시 결과 보고,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과정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절차 준비 구제절차 수립 구제절차 시행 평가와 개선

◦ 인권경영 관련 자료 홈페이지 탑재

- 인권경영의 추진배경, 개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경영선언문 등 인권경영 관련자료를 홈페이지 탑재하여 인권경영 활성화 도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www.krivet.re.kr) - 연구원 소개 - 경영혁신의 하위메뉴에 관련 내용 탑재(홈페이지 개편과 연계)

○ 인권경영 체계구축 4단계 : 인권 피해자 구제절차 제공

〈참고〉 '인권경영' 단계별 목표 및 주요활동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목표	인권경영체계 구축 (기관 인권 경영 비 전 과 의지 대내외 공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경영 이행)	인권경영 실행·공개 (인권침해방지 및 완화 조치)	인권 피해자 구제절차 제공 (구제절차 마련)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 시스템 구축 인권경영 선언 확산 인권경영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실시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교육 평가 실시 결과 보고,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실행 인권경영과정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제절차 준비 구제절차 수립 구제절차 시행 평가와 개선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 직능연 인권경영규칙 제16조 및 17조 (인권경영위원회의 설 및 및 기능/구성)
- 목적 :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각종 정책심의 및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외부위원 5인, 내부위원 4인)

◦ **인권침해상담원 구성·운영**

- 근거 : 직능연 인권경영규칙 제12조 3항 (인권침해상담원)
- 구성 : 주관부서의 담당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
 - ※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
- 주요역할 :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 인권침해 직원에 대한 상담 / 절차 안내

◦ **인권침해 신고 사이트 운영**

- “인권침해신고”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 또는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 또는 인권침해상담원에 신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www.krivet.re.kr) - 소통 - 클린신고센터-인권침해 신고 관련 내용 탑재

The screenshot shows the 'Clean Reporting Center'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Home', 'Society', 'Clean Reporting Center', 'Report Information', and 'Logout'. Below the navigation, there are several reporting categories: '부패행위신고', '정착금지 위반신고', '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 위반신고', and '인권침해신고' (highlighted in a red box).

The '인권침해신고' section contains a table with the following content:

제도안내	"인권침해신고"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 또는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 또는 인권침해상담원에 신고. 신고인의 신분은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제반 불이익을 받는 경우 원상복구 조치하고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인권경영 일반 원칙침해신고" ① (고용상의 차별금지) 직능연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②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직능연은 근로자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 ③ (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직능연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 ④ (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직능연은 모든 협력기관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 ⑤ (여성권리 및 모성보호) 직능연은 채용,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 ⑥ (직원 등의 인권 보호) 직능연은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과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개인정보 보호 등 우호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
관련법령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방법	* 익명신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침해 상담원에게 접수되고, 처리결과는 이메일 또는 전화로 귀하(신고자)께 통보됩니다. * 익명신고 : 신고내용은 아래 익명신고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고(우편, 방문, 이메일 등)하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침해 상담원이 처리하지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침해 상담원 ● (이메일) : humanrights@krivet.re.kr

At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there are two buttons: '익명신고서식 >' and '익명신고 >'.

□ 중대성 평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2022.08)’을 통해 인권영향평가 결과 식별된 여러 이슈(인권영향평가 분야)를 대상으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대처할 주요 이슈(주요사업 부문)를 도출하도록 권고하였음
- 중대성 평가는 해당 인권이슈의 발생 가능성(likelihood)과 영향 심각성(consequence)을 기준으로 실시
-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권이슈별 점수를 산출하고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주요 인권이슈(주요사업 부문)로 선정 검토
 - **고위험군** : 발생 가능성 수준과 영향 심각성 수준을 합한 점수가 8점 이상인 주요 인권이슈로 최우선적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위험군** : 발생 가능성 수준과 영향 심각성 수준을 합한 점수가 5점 이상인 주요 인권이슈로 고위험군에 이어 차순위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저위험군** : 발생 가능성 수준과 영향 심각성 수준을 합한 점수가 5점 미만인 인권이슈로 상대적으로 후순위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9개 분야(기관운영부문 8개 분야, 주요사업 부문 1개 분야)에 대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
 - 중대성 평가에서 식별된 여러 인권이슈 중에서 관련 실태조사, 이해관계자의 복잡성과 다양성, 인권영향 수준, 위법여부, 침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수, 피해의 사후적 구제가능성, 국가 정책, 기업의 업종, 피해 발생 장소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 필요
 - 금년도 평가에서는 전반적인 항목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 발생되었을 경우 ‘영향 심각성’을 매우 높게(5점) 평가하고 있는 항목이 3개 항목(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연소자 고용금지이며, 높게(4점) 평가하고 있는 항목은 10개 항목(고용상 비차별 등)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임
 - 중위험군 중에서 ‘영향심각성’ 점수가 높은 항목(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요청
 - ‘발생가능성’ 항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실제 발생할 경우 충분한 대응력 마련을 위한 준비 및 이후 파급되는 영향심각성과의 상관 관계성에 대한 충분한 통찰과 대비가 필요

II 2024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 인권영향평가 개요

- 목적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 경영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동 이행계획 중 2단계인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고자 함
- 일정 : '24.11.22(금)~11.26(화), (회신기간 포함, 서면 평가)
- 주요 참여자(총 10명_원의 6명 및 원내 4명)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정○○, 구○○, 진○○, 신○○(4명)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 노조사무국장(4명)
 - 외부 전문가 추가 위촉 : 양○○, 조○○(2명)
- 안건 : 2024년도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분야별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실시
- 2024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위원회 명단

<인권경영위원회 역할>

- 인권경영과 관련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각종 정책의 심의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인권경영위원회	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위원장
2		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4		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5		정○○	한남대학교 법학부
6		구○○	노무법인 평로
7		진○○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8		신○○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9	외부 전문가 추가위촉	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0		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인권경영위원회	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간사

※ 인권경영위원회에 외부 전문가(2인) 추가 위촉

○ 인권영향평가 세부추진 사항

절차	원칙 및 내용
<p>1.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 수립 (주요사업 평가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목적과 원칙, 평가 주체, 평가 기간, 소요 예산, 주요사업 선정 이유 등 관련 계획 수립 -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정보접근성 등 평가의 기본 원칙 수립 및 준수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경영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지표’를 기반으로 기관 실정에 맞는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 - ‘주요사업’ 평가를 위해, 기관 주력사업(대표사업) 중 국민 및 이해관계자 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선정 (통상 향후 수행할 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나, 완료 사업에 대해 실시할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부족한 부분 보완 가능) *주요사업 세부선정절차 : 인권경영 소관조직별 점검, 유사기관 선정사례 조사결과, 전직원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선정 - 선정 사업의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 분석(내외부 의견 수렴, 국내외 법률 등 환경 분석 병행 가능) - 분석한 리스크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포함할 지표 선정 및 이를 바탕으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내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통해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 확보 필요) - 최고경영진에 계획 보고 및 승인
<p>2.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지표를 기반으로 확정 *주요사업 체크리스트 확정절차 : 인권경영 소관조직별 점검, 유사기관 선정사례 조사결과, 전직원 의견수렴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고, 세부점검리스트는 소관조직과 협의 확정 - 평가에 대한 이해 증진과 협력 확보 등을 목적으로 온·오프라인 체크리스트 지표 공유
<p>3.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자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평가 자료 취합 후 인권경영위원회 제출(대외비 주의)
<p>4. 인권경영위원회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위원회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평가 - 전년도 기관운영(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처리 및 이행실적, 성과 등도 동시 평가
<p>5. 최고경영진 보고 및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경영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담당부서에 제출 - 평가결과 보고서에는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 실제적·잠재적 인권 리스크에 대한 방지조치 등 포함 필수 -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평가결과를 최고경영진에 보고(이후, 인권침해 방지 조치를 수립·시행 가능하며, 방지 조치 결과를 다음 평가 과정에 반영하여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가능) -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에게 평가결과 공개

○ 평가 기준

(* 지표별로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중 선택 : 단, '정보없음/ 해당없음' 항목은 평가 제외)

구분	인권영향평가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평가 실시 주체	인권경영위원회 (내부 위원 4인(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6인)										
평가 대상	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활동	연구사업 관리, 수행, 평가									
평가지표 및 체크리스트 확정	국가인권위원회 평가지표 및 체크리스트 활용	- 인권경영위원회 의견, 임직원 대상 의견수렴, 유관 기관의 최근 [주요사업 부문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사업 부문 대상 사업 선정(평가지표) - 선정된 [주요사업 부문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관계부서 논의를 통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체크리스트 구성 (* 상세 문항은 '붙임' 참고)	체크리스트 구분 (8개 분야)	총 89개 지표	주요사업 부문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 : 연구사업 관리, 수행, 평가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체크리스트 구분 (3개 분야)</th> <th>총 10개 지표</th> </tr> </thead> <tbody> <tr> <td>연구사업 관리</td> <td>(3개)</td> </tr> <tr> <td>연구사업 수행</td> <td>(4개)</td> </tr> <tr> <td>연구사업 평가</td> <td>(3개)</td> </tr> </tbody> </table>	체크리스트 구분 (3개 분야)	총 10개 지표	연구사업 관리	(3개)	연구사업 수행	(4개)	연구사업 평가	(3개)
	체크리스트 구분 (3개 분야)	총 10개 지표									
	연구사업 관리	(3개)									
	연구사업 수행	(4개)									
	연구사업 평가	(3개)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8개)									
	고용상의 비차별	(16개)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개)									
	강제 노동의 금지	(7개)									
아동노동의 금지	(5개)										
산업안전 보장	(7개)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6개)										
사회적 가치	(6개)										

□ 20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 평가 요약

[인권영향평가 결과 요약]

구분	평가 결과	주요 평가 의견	결과 분석
기관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8개 분야 항목 89개 지표(문항) 평가(* 평가위원 10명) 평가 실시 결과, '예'의 답변 비율이 99.66%이며 이는 '인권경영'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 - 8개 분야 88개 지표는 현행 실적으로 평가 기준을 일괄 충족 - 1개 분야 1개 지표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보완)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중 인권존중 정책선언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의 항목 보완 권고 - 2019년 인권존중 정책선언 이후 5년 경과에 따라 대내외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개선을 권고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구성원들의 인식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도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기관운영/주요사업)이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음 평가위원 의견(제시의견 및 총평) 등을 참고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 향후 개선(보완) 추진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3개 분야 10개 지표(문항) 평가(* 평가위원 10명) 평가 실시 결과, '예'의 답변 비율이 100%이며, 이는 주요사업(연구사업관리, 수행, 평가)이 일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사업의 운영이 관련 분야 및 지표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적인 인권경영 실현 기대
비고			

[※ 향후 개선 방안 : 인권영향평가 환류체계 운영]

구분	내용	비고
원내(직능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결과(의견) 등을 참고하여, 지속적인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환류체계' 운영 기관 운영 부문의 '인권정책선언'에 대하여 2019년 수립 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국내외 인권현황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계획(안) 검토 	평가 의견 분석 ⇒ 개선 방안 마련 및 실행 ⇒ 모니터링 실시

○ [기관운영 부문] 세부 평가 결과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_종합통계표] 총 8개 분야 89개 지표

- ▶ 총 8개 분야 89개 지표(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 도출
 - 평가위원(총 10명)의 평가 결과를 취합

구분	평가 지표		평가 결과					
	8개 분야	지표 (개)	총 응답수 (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합계		89	89	887	3	0	0	0

▶ 분석 결과

- 8개 분야에 걸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의 답변 비율이 99.66% 미며 이는 '인권 경영'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
- 7개 분야(고용상의 비차별/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사회적 가치)는 현행 실적으로 평가 기준을 일괄 충족
- 1개 분야(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보완)이 필요

평가 결과

지표	평가 대상 수치 (지표*응답자)	'예' 답변 비율(%)	비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80	98.9	향후 개선 필요
2. 고용상의 비차별	160	100.0	평가 기준 일괄 충족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0	100.0	평가 기준 일괄 충족
4. 강제 노동의 금지	70	100.0	평가 기준 일괄 충족
5. 아동노동의 금지	50	100.0	평가 기준 일괄 충족
6. 산업안전 보장	70	100.0	평가 기준 일괄 충족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60	100.0	평가 기준 일괄 충족
8. 사회적 가치	60	100.0	평가 기준 일괄 충족
합계	890	99.66	응답율 기준

구분	평가 지표		평가 결과					
	항목	지표 (개)	총 응답수 (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28	280	277	3	0	0	0
2	고용상의 비차별	16	160	160	0	0	0	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140	140	0	0	0	0
4	강제 노동의 금지	7	70	70	0	0	0	0
5	아동노동의 금지	5	50	50	0	0	0	0
6	산업안전 보장	7	70	70	0	0	0	0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6	60	60	0	0	0	0
8	사회적 가치	6	60	60	0	0	0	0
합계		89	890	887	3	0	0	0

취합 결과



평가 위원

의견 (총평)

취합

▶ **평가위원별 총평 취합 (제시의견 포함)**

- 연구원은 인권경영체계 구축하였고, 그 운영이 전반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음
 - 중대성평가를 신설하고, 규정을 개정하는 등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확인함
- 2024년 인권영향평가 리스트 8개 분야 88개 항목에서 준수함
- 보완필요 1개 항목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중 인권존중 정책선언 6. 인권정책선언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되고 개선된다는 항목은 보완을 권고함 - 2019년 인권존중 정책선언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개선을 권고
- 인권경영선언문에 대한 검토 필요
 - 2019년 제정 이후 5년이 경과되어 이에 대한 검토 요망
- 인권영향평가지표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대내외 관련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각가의 역할,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에는 평상시의 인권관련 관리 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한 분쟁에서의 각 당사자들에 대한 관리 기준, 보호조치 등을 좀더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검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예컨대 성희롱, 괴롭힘, 침해신고 등의 경우에 신고인에 대한 정보제고, 보호조치, 피신고인에 대한 무죄추정, 재심기획, 처분기관의 진행시 역할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
- 평가대상의 모든 항목에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도록 실적관리가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다만, 기관명칭변경에 따른 ‘인권경영선언문’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선언문 검토시 국내외 인권환경 변동사항 포함
 - 일부 지표에 해당하는 권규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8개분야 89개 지표로 구성된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인권양향수준을 파악하는데 적절한 지표라고 판단됨
- 점검결과 일부지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예”로 답변이 이루어져, 전반적으로 인권영향평가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직업능력연구원의 인권경영이 5년 정도 경과하였으니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성과를 되돌아보고 좀 더 중점을 두어야할 부분을 살펴보고 놓친 부분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항목은 총 8개 분야 8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에서 “2024년 인권경영 중대성 평가 계획(안)” 및 “2024년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부문 선정을 위한 의견 조사 계획(안)”을 수립하여 시행한 것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는 등 인권경영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해 ‘인권경영규칙’ 등 관련 규정 개정 노력 등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실적이 높음
- 성폭력 및 갑질 예방과 대응을 위한 원규가 마련되어 있고, 관련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원내에서 성폭력 및 갑질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주요사업 부문] 세부 평가 결과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대상 사업 : 연구사업 관리, 연구사업 수행, 연구사업 평가

평가
결과

- ▶ 총 3개 분야 10개 지표(문항)에 대한 평가 결과 도출
 - 평가위원(총 10명)의 평가 결과를 취합

구분	평가 지표		평가 결과					
	3개 분야	지표 (개)	총 응답수 (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합계		10	100	100	0	0	0	0

- ▶ 분석 결과

- 3개 분야에 걸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의 답변 비율이 100%이며 이는 주요사업(연구사업 관리, 수행, 평가) 관련 인권경영이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을 의미함.
- 3개 분야(연구사업 관리, 연구사업 수행, 연구사업 평가)에 대해 현행 실적으로 평가 기준을 일괄 충족

지표	평가 대상 수치 (지표*응답자)	'예' 답변 비율(%)	비고
1. 연구사업 관리	30	100.0	평가 기준 일괄 충족
2. 연구사업 수행	40	100.0	평가 기준 일괄 충족
3. 연구사업 평가	30	100.0	평가 기준 일괄 충족
합계	100	100.0	

취합
결과

구분	평가 지표		평가 결과					
	이슈	지표 (개)	총 응답수 (개)	예	보완 필요	아니요	정보 없음	해당 없음
1	연구사업 관리	3	30	30	0	0	0	0
2	연구사업 수행	4	40	40	0	0	0	0
3	연구사업 평가	3	30	30	0	0	0	0
	합계	10	100	100	0	0	0	0

주요사업 부문

연구사업 관리								
연구사업 수행								
연구사업 평가								

평가 위원 의견 (총평) 취합	▶ 평가위원별 총평 취합 (제시의견 포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연구이며, 동 연구사업은 해당 연구분야에 가장 적합한 역량을 가진 구성원이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 대비 가장 높은 연구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관리, 수행,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사업의 관리, 그에 따른 수행과 그 결과물의 측정을 위한 평가는 공개된 규정과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평가대상의 모든 항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연구원은 연구사업관리분야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
의견 (총평)	- 3개분야 10개 지표 모두를 준수
취합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에 부합하도록 실적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됨
	◦ 3개분야 전체에 걸쳐서 답변이 “예”로 이루어져, 주요사업 인권영향 평가가 기관운영에 있어서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항목은 총 3개 분야 10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연구사업 관리에서 연구과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기본연구사업 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연구과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의를 위해 직원근무성적평정규칙 제13조에 따라 운영 중에 있음

□ 인권영향평가 분석 의견

- 연구원은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운영 부문과 주요사업 부문 인권영향평가로 구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바탕으로 구성.
- 주요사업 부문은 ‘연구사업 관리, 연구사업 수행, 연구사업 평가’를 대상으로 실시
 - 인권경영위원회 의견, 임직원 대상 의견수렴, 유관기관의 최근 [주요사업 부문] 현황을 바탕으로 [주요사업 부문] 대상 사업 선정(평가지표)
 - 선정된 [주요사업 부문] 대상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관계부서 논의를 통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선정된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인권경영위원회 및 추가 위원 선정을 통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기관운영 부문 총 8개 분야 89개 지표(문항)

- 기관운영 부문 평가 결과, 총 8개 분야 89개 지표 중에서 88개의 지표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고 ‘보완 필요’로 평가된 1개 지표에서 개선사항을 도출.
-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중 인권존중 정책선언에 대하여 2019년 제정 이후 5년이 경과 됨에 따라 국내외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
- 주요사업 부문 인권영향평가 결과, 3개 분야 10개 지표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됨. 연구사업의 관리, 그에 따른 수행과 그 결과물의 측정을 위한 평가는 공개된 규정과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연구사업의 관리, 그에 따른 수행과 그 결과물의 측정을 위한 평가는 공개된 규정과 지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향후에는 평상시의 인권관련 관리 뿐만 아니라, 인권과 관련한 분쟁에서의 각 당사자들에 대한 관리 기준, 보호조치 등을 좀더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검토를 고려
 - ‘보완필요’로 평가된 지표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예’로 평가된 지표에 대해서도 제도 보완과 실천 노력의 병행 필요

III 2024년도 인권경영 운영 실적

□ 인권경영 중대성 평가 실시

○ 평가 개요

- 2023년도 인권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인권영향평가표(붙임 참조)에 의거 발생 가능성 및 영향 심각성에 대한 평가
- 최근 발생 현황 및 그에 따른 영향력 등에 대하여 담당 부서의 팀장 및 담당자(1인 이상)의 복수 의견에 의거 평가 실시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군, 중위험군, 보통위험군으로 분류 평가
- 중대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권이슈별 점수를 산출하고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분류하여 고위험군과 중위험군을 주요 인권이슈 검토

○ 평가 결과

- 중대성 평가에서 식별된 여러 인권이슈 중에서 관련 실태조사, 이해관계자의 복잡성과 다양성, 인권영향 수준, 위법여부, 침해의 심각성, 피해자의 수, 피해의 사후적 구제가능성, 국가 정책, 기업의 업종, 피해 발생 장소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 필요
- 금년도 평가에서는 전반적인 항목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 발생되었을 경우 '영향 심각성'을 매우 높게(5점) 평가하고 있는 항목이 3개 항목(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등),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연소자 고용금지)이며, 높게(4점) 평가하고 있는 항목은 10개 항목(고용상 비차별 등)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임
- 중위험군 중에서 '영향심각성' 점수가 높은 항목(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강제 노동의 금지, 아동노동의 금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요청
- '발생가능성' 항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실제 발생될 경우 충분한 대응력 마련을 위한 대한 준비 및 이후 파급되는 영향심각성과의 상관 관계성에 대한 충분한 통찰과 대비가 필요

□ 인권경영규칙 개정

- 개정사유 : 인권경영위원회 위원들의 2023년 인권영향평가에서 원규 개정 의견 제시된 검토 의견을 토대로 원규에 반영
- 주요개정 내용
 - 가. 인권경영과 관련한 협력기관과의 소통 강화 근거 조항 개정
 - 나.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근거 조항 개정
- 인권경영규칙 개정 내용

현 행 (2019.12.01.)	제·개정 입안 안 (2024.10.14.)	비 고
제4조(인권경영의 이행) 직능연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4조(인권경영의 이행) 직능연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구제 및 원인제거를 위해 노력한다.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사전 노력과 더불어, 발생한 인권침해 원인제거 통하여 재발방지에 노력 - 인권경영위원회 의원 의견 참조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직능연은 모든 협력기관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기관 관리) 직능연은 모든 협력기관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직능연 경영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및 협력기관과 소통 절차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 인권경영과 관련한 협력기관과의 소통을 통하여 건전한 제도의 운영을 위한 노력 증진 - 인권경영위원회 의원 의견 참조 - 제3조(정의)에서 밝힌 용어의 통일을 위한 자구 수정

□ 2024년 인권경영 교육 실시

- 전직원 인권교육 실시
 - 일정 : 2024. 01.01. ~ 11. 30. (비대면 온라인교육)
 - 이수현황

구분	대상	이수	불참	참석률	비고
전체 임직원(보직자 포함)	219명	205명	14명	93.6%	24.12.17기준
보직자(원장, 본부장 등)	28명	27명	1명	96.4%	평가 1명

- 교육내용 : 핵심만 꼭! 인권경영의 이해
- 교육 업체(모두의 러닝) 사이트(<http://modulearning.kr>) 을 통한 교육 수강

○ 2024년 보직자 인권경영 교육 실시

- 대상 : 전체 보직자
- 일정 : 2024. 12. 02(대면 교육)
- 이수현황

구분	대상	이수	불참	참석률	비고
보직자(원장, 본부장 등)	26명	26명	2명	92.8%	연수 1명, 병가 1명

- 교육내용

- 1) 혐오차별 예방 교안(국가인권위원회)
- 2) 인권침해 구제절차 매뉴얼

○ 2024년 인권침해 상담원 인권경영 교육 실시

- 대상 : 인권침해 상담원 2명
- 일정 : 2024. 11. 06(온라인 교육)
- 이수현황 : 100%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설한 ‘알기 쉬운 인권상담’

○ 인권침해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 신설(2024.4.)

- “인권침해신고”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 라 한다) 또는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주관부서 또는 인권침해상담원에 신고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www.krivet.re.kr) - 소통 - 클린신고센터-인권침해 신고 관련 내용 탑재

